

## 2022 세종시교육청-세종교총 교섭·협의(1차)

| 장                                               | 조  | 항 | 세종교총 교섭 협의 요구(안)                                                                                                                                                                | 1차 합의(안)                                                                                                                                                                |
|-------------------------------------------------|----|---|---------------------------------------------------------------------------------------------------------------------------------------------------------------------------------|-------------------------------------------------------------------------------------------------------------------------------------------------------------------------|
| 제2장<br>교원의<br>근무여건<br>및<br>교원<br>인사<br>제도<br>개선 | 6  | 1 | 제6조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br>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가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가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                                                 |    | 2 |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도록 노력한다.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이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여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                                                 |    | 3 | 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 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
|                                                 | 9  | 1 | 제9조 【교감 근무여건 개선】<br>교육청은 교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검토·실시한다.<br>교육청은 교감의 업무 증가를 감소시킬 대책을 마련한다.                                                                              | 교육청은 교감의 업무고충 실태를 파악하고 유형별 교감업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                                                 |    | 2 | 교육청은 교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한다.                                                                                                                                   | 교육청은 교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도록 노력한다.                                                                                                                        |
|                                                 |    | 3 | 교육청은 교감의 직급보조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 교육청은 교감의 직급보조비를 현실에 맞게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건의하도록 노력한다.                                                                                                                          |
|                                                 | 11 | 1 | 제11조 【각종 교원수당 인상】<br>교육청은 교원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교원수당 인상과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청과 의견을 검토하고, 수십년간 동결된 교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3,000원씩 가산)를 현실성 있게 인상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한다. | 교육청은 교원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교원수당 인상과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청과 의견을 검토하고, 수십년간 동결된 교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3,000원씩 가산)를 현실성 있게 인상하도록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건의하도록 노력한다. |
|                                                 |    | 2 | 제13조 【업무중심의 표창 개선】<br>교육청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포상이 업무중심이 아닌 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교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포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교육청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포상이 업무중심이 아닌 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교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포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                                                 | 14 | 1 | 제14조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개선】<br>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인사 및 채용, 복무 관리는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안내하여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추후 협의                                                                                                                                                                   |
|                                                 | 15 | 1 | 제15조 【교육비 지원 업무 지자체로 이관 개선】<br>교육청은 매년 학부모가 지자체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노력한다.                                                                                     | 추후 협의                                                                                                                                                                   |

|                                |   |                                                                                                                                                            |                                                                                                                                                |
|--------------------------------|---|------------------------------------------------------------------------------------------------------------------------------------------------------------|------------------------------------------------------------------------------------------------------------------------------------------------|
| 제3장<br>교원의<br>교육활동<br>지원장<br>보 | 1 | 제1조 【교육공무직과 단체협약 시 학교장 참여보장】<br>교육공무직과의 단체협약 시 교장단 대표가 참여하도록 한다.                                                                                           | -                                                                                                                                              |
|                                | 2 | 제2조 【학교 내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비책 마련】<br>교육청은 학교 내 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고충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교육공무직 파업시 교원이 이를 대체하지 않도록 한다.                                          | 추후 협의                                                                                                                                          |
|                                | 3 | 제3조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명시】<br>교육청은 「노동조합법」상 학교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한다.                                                                           | 추후 협의                                                                                                                                          |
|                                | 4 | 제4조 【학교 업무 갈등 시 지원 방안 마련】<br>교육청은 학교 내에 교원과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원 간 업무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청은 학교 내에 교원과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원 간 업무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                                | 5 | 제5조 【교원의 업무 경감】<br>교육청은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검토·시행한다.<br>교육청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TF팀 구성 시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청은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검토·시행한다.<br>교육청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TF팀 구성 시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
|                                |   | 2 교육청은 공문서 이외의 방법(업무메일)으로 보고 요구 및 업무 협조 요청을 지양한다.                                                                                                          | 교육청은 공문서 이외의 방법(업무메일)으로 보고 요구 및 업무 협조 요청을 지양한다.                                                                                                |
|                                |   | 3 교육청은 각종 감사 시 기존 자료를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청은 각종 감사 시 기존 자료를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
|                                |   | 4 교육청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높이고자 학교현장에 대한 방문 점검 및 독촉을 하지 않도록 한다.                                                                                                      | 교육청은 학교 예산의 적기집행을 추진하고, 재정집행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지원한다.                                                        |
|                                |   | 5 교육청은 국회, 시의회의 각종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나이스·교무업무·에듀파인 등에 있는 자료는 맞춤형 통계분석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자료 요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단위학교에서 자료 준비 기간을 최소 10일 이상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청은 국회, 시의회의 각종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나이스·교무업무·에듀파인 등에 있는 자료는 맞춤형 통계분석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자료 요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단위학교에서 자료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                                |   | 6 교육청은 담당 부서별 기본 계획이나 지침 등을 신학기 시작 전에 학교 현장에 알리고, 당해 연도에는 변경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                                                                                                                                              |

|                                              |   |   |                                                                                        |       |
|----------------------------------------------|---|---|----------------------------------------------------------------------------------------|-------|
| 제4장<br>교원<br>단체<br>활동<br>보장<br>및<br>지원<br>확대 | 1 | 8 | 교육청은 교원과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의 업무 및 복무에 대해 법률적 근거에 의거한 기준을 제시한다.                               | 추후 협의 |
|                                              |   | 1 | 제1조 【자료제공 협조】<br>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종교총에 제공한다.<br>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내용                       | -     |
|                                              | 2 |   | 제2조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보장】<br>교육청은 주요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교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     |

2023. 2. 9.



세종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  
우태제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최근세 